

● 제289회 ●
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

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(가칭) 서울 #WithU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검토보고서

2019. 8. 30.

보건복지위원회

수석전문위원

## 【 서울특별시장 제출 】

의안번호 981

### I. 조례안 개요

#### 1. 제출자 및 제안경과

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나. 제출일 : 2019. 8. 7.

다. 회부일 : 2019. 8. 13.

##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##### 가. 제안이유

- 서울 #WithU센터는 성희롱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성희롱·성폭력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보호하고, 피해 발생시 체계적인 통합 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임
- 법인 또는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인적·물적 지원을 활용하여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

##### 나. 주요내용

### (1) 시설개요

- 시설명 : (가칭)서울 #WithU센터
- 소재지 : 미정 (민간시설 임대 예정)
- 시설규모 : 연면적 약 400m<sup>2</sup>
- 개소일자 : 2020. 3.(예정)
- 이용대상 :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근무 노동자 및 일반시민
- 근거법령 : 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30조제2항 및 제3항,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제2조

### (2) 주요위탁 내용

- 위탁기간 : 3년 (2020. 3. ~ 2023. 2. 예정)
- 위탁사무 : 서울 #WithU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  -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 지원 : 고충상담원 교육 및 사건 컨설팅 등
  -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 : 10인미만 사업장 특별 관리
  - 성희롱 근절을 위한 시민인식 및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기획·홍보
  - 민간 전문기관 연계 및 지원
  - 기타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
- 소요예산 : 1,144백만원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신규위탁)

### (3)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- 추진 근거
  -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제57조제1항(사무의 위탁)
  - 「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- 필요성
  - 기존 성희롱 피해 지원의 법적·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, 조직문화·시민의식 개선, 피해자 지원 등의 통합적 지원을 위해 전문성 있는 업무추진이 필요
  -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다양한民間 자원과 연계, 활용하여 업무처리의 유연성 및 효율성의 강화가 필요함.

#### 다. 참고사항

##### (1) 관계법령

- 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30조

**제45조(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)**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·운영 할 수 있다.

**제30조(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·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, 각 교육과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·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(矯正)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-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제2조

**제2조(시의 책무)**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는 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추진 및 재원을 마련하고, 「양성평등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

-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제57조

**제57조(사무의 위탁)**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제1호

**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**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(2) 예산조치 : 2020년 예산편성

(3)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(4)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## 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### 1 동의안의 개요

- 본 동의안은 '(가칭)서울 #WithU센터 운영'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 제1항<sup>1)</sup>에 따라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하여,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것임.
- 시장이 민간위탁 하려는 사무의 구체적 내용은 고충상담원 교육 및 사건 컨설팅 등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 지원,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(10인미만 사업장 특별 관리), 성희롱 근절을 위한 시민인식 및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기획·홍보, 민간 전문기관 연계 및 지원, 그 외 기타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 등임.

### 2 (가칭)서울 #WithU센터 설치 추진 경위 및 추진 현황

- (가칭)서울 #WithU센터의 설립 목적은, 성희롱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성희롱·성폭력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보호하고, 민간의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피해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.

---

1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- 서울시는 동 센터 설치를 위해 아래 표에 제시된 추진경과와 같이 2018년부터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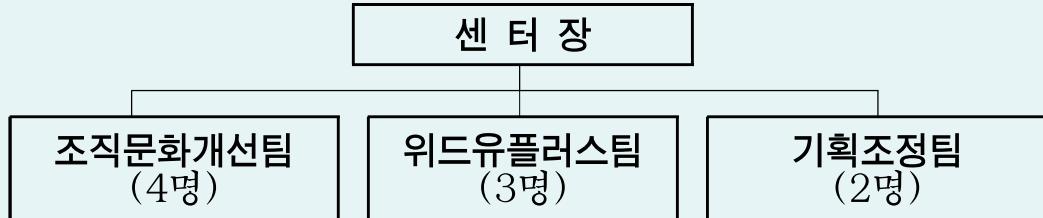
<(가칭)서울 #WithU센터 설치 사업 추진 경과>

- '18. 3. 8. : 「성희롱·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서울 추진계획」 발표
- '18. 7. ~ 9. : 더깊은변화위원회 개최(3회)
- '18. 9. ~ 12. : 서울 #WithU 프로젝트 사업 추진
  - 소규모 사업장 예방교육, 캠페인, 피해자 지원 등
- '18. 12. 3. : 민·관·기업 공동 협력 '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만들기' 출범식 개최
  - 6개 기관 공동협력 체결, 비정규직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, 안심일터 제도화 공표 등
- '19. 2. ~ 8. : 서울 #WithU 센터 설치 자문위원회, 전문가 자문회의(11회)
- '19. 3. ~ 8. : 서울 #WithU 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컨설팅 추진
- '19. 7. 27. : 서울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(조직담당관)

- 동 센터는 향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10명의 인력이 필요하며, 약 400m<sup>2</sup>(전용면적 260m<sup>2</sup>, 공용면적 140m<sup>2</sup>)규모의 시설을 임차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10명으로 동 센터의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, 이에 따른 운영 조직(안)은 다음 그림과 같음.
-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은 2020년 총 11억 4,400만 원으로 추계됨.

## <(가칭)서울 #WithU센터 운영 조직(안)>

- 조직구성 : 3팀 10명(센터장1, 팀장3, 팀원 6)
- 조직도



- 주요 기능

부 서	담 당 업 무
센 터 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서울#WithU센터 운영 총괄</li></ul>
조 직 문 화 개 선 팀 (4 명 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예방 컨설팅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#WithU 컨설팅 매뉴얼(키트) 개발</li><li>- 조직문화 진단 및 맞춤형 솔루션 제공</li></ul></li><li>○ 사업장 성희롱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, 고충처리 업무 교육(상담) 등</li></ul></li><li>○ 서울시와 계약관계 업체 특별관리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고충상담원 BANK 등록, 고충상담원 지정, 예방교육 등</li></ul></li></ul>
위 드 유 플 러 스 팀 (3 명 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성희롱 2차 피해 예방 및 사건지원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률자문, 소송비용, 동행지원 등※1차 피해지원 : 민간 전문기관 연계, 긴급시 직접지원</li></ul></li><li>○ 위드유플러스 심의위원회 운영</li><li>○ 위드유플러스 현장지원단 운영</li><li>○ 위드유 온라인 상담소(지식IN) 운영</li><li>○ 성희롱 피해지원 민간단체 사업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</li></ul>
기 획 조 정 팀 (2 명 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지식정보 시스템 구축 및 관리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성희롱 관련 법률·제도, 판례, 사건처리 결정례집, 통계 등</li></ul></li><li>○ 성희롱 피해자 지원 매뉴얼(포켓북) 제작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신고 방법, 처리과정, 지역별 피해지원 상담MAP 등</li></ul></li><li>○ 조직문화 및 시민인식 개선 캠페인 기획·실시</li><li>○ #WithU 센터 홈페이지 및 SNS 운영</li><li>○ 회계, 행정, 인사, 시설관리 등</li></ul>

### 3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

-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民間에 위탁하는 것은, 행정권의 포기와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.
- 「지방자치법」<sup>2)</sup>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30조<sup>3)</sup>와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<sup>4)</sup>에서 시장의 성희롱 방지와 피해자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,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(가칭)서울 #WithU센터의 운영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볼 수 있으며,
- 「민간위탁조례」 제4조<sup>5)</sup>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“특

- 2) 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3) 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30조(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·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 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, 각 교육과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  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·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(矯正)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4)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제21조(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) ① 시장·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문서, 회의,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·예방하여 평등한 시정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.  
② 시장·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 
③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·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.  
④ 시장·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면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 
⑤ 시장·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5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

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”를 법인·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,

- 고충상담원 교육 및 사건 컨설팅 등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 지원,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, 성희롱 근절을 위한 시민인식 및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기획·홍보, 민간 전문기관 연계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에 함에 있어 전문성을 요구하는 (가칭)서울 #WithU센터의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.
- 또한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21조<sup>6)</sup>에서 조례에 따른 시장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한 바, (가칭)서울 #WithU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.

※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서 시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성희롱을 예방·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 의무는 「남녀고용 평등<sup>7)</sup>에서 규정한 직장내 성희롱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임.

---

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 3. **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**
 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- ② 삭제
- 6)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45조(사무의 위탁)  
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  
② 기타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  - 7)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 
2. “직장 내 성희롱”이란 사업주·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.

- 한편, (가칭)서울 #WithU센터 운영 사무는 고충상담원 교육 및 사건 컨설팅 등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 지원,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, 성희롱 근절을 위한 시민인식 및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기획·홍보, 민간 전문기관 연계 및 지원하는 등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 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할 것임.
  - 따라서 이의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민간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아이디어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측면이 크다고 판단됨.
- 다만, 서울시에서는 (가칭)서울 #WithU센터 운영 사무와 관련하여, 기존의 유사 시설 또는 유사 사업간 유사·중복 여부 또는 차별화 전략 등에 대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.
  - 이와 관련하여, 현재 서울시에서 설치·운영 중인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,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, 서울노동권익센터,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음.

## 4 종합 검토 의견

-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, '(가칭)서울 #WithU센터 운영'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법적 요건 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됨.
- 다만 직장맘지원센터 등 기존 유사시설 또는 사업과의 유사·중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존 유사·동종 기관/시설 및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 근거한 통폐합 또는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.